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923호 2023. 8. 2.(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99호	도로명주소 고시 2
거창군 고시 제2023-100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3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1193호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5
거창군 공고 제2023-1199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

회 략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2.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갈지2길 41-83 등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일

거창군수

1. 고시일자 : 2023. 8. 2.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4. 참고사항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3년 8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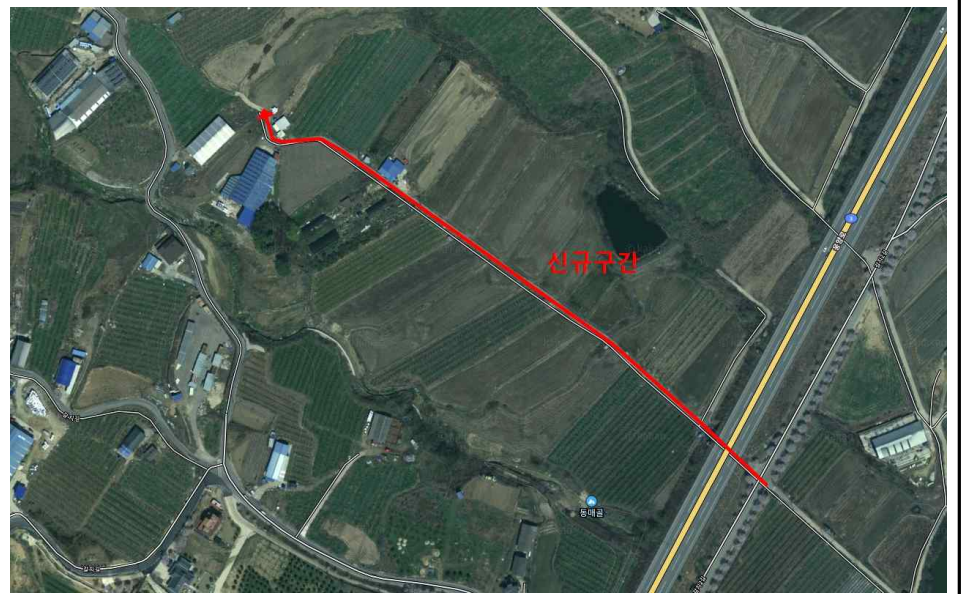
도로구간 변경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1	거창읍	변경 전	갈지2길	거창읍 가지리 972-5 (갈지2길 41)	-	도면참조	0	없음	종속구간 생성	직권
		변경 후	갈지2길	거창읍 가지리 972-5 (갈지2길 41-1)	거창읍 가지리 1641 (갈지2길 41-86)	도면참조				

주소정보기본도



위성사진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7일

거창군수

1. 제정 이유

거창군의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등 총칙(안 제1조~제4조)

- 목적, 정의, 책무, 조성원칙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안 제5조~제13조)

-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아동참여보장, 건강증진,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친화적 공공시설조성, 교육, 여가, 문화생활 확충 및 아동권리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강화 등

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안 제14조~제22조)

- 구 성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군수가 위촉
- 기 능 :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심의·자문

라. 아동권리 대변인(안 제23조 ~ 제28조)

- 구 성 : 5명 이내 분야별 전문가 위촉
 - 기 능 : 아동권리 관련 정책·제도·법령·서비스 개선
- 마. 아동영향평가(안 제29조~제30조)
-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 (50132)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 연락처 : 전화 055-940-3782, 팩스 940-3739
- 이메일 : ram21228@korea.kr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말한다.
3.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 및 사법절차에서 아동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시행할 때에 아동을 포함한 군민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의 참여보장)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아동의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9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군수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
2. 아동의 놀이 및 휴식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군수는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아동권리 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동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인식확산을 위해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시설관계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관계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13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4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이나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가
3. 아동 관련 기관·단체 대표
4. 아동보호자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들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아동권리 대변인

제23조(아동권리 대변인 운영) 군수는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거창군 아동권리 대변인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기능) 아동권리 대변인은 다음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관련된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개선안 제안
4.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

제25조(구성) ① 아동권리 대변인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아동권리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3. 그 밖에 아동 관련 분야에 풍부한 식견이 있는 사람

제26조(임기) 아동권리 대변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아동권리 대변인 해촉) 군수는 아동권리 대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아동권리 대변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8조(수당)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대변인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아동영향평가

제29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 ② 군수는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0조(아동영향평가 실시 제외)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2. 6. 15.] [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아동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아동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아동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아동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 「거창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필요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와 성비규정준수 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은 최대 4개 위원회까지 위촉할 수 있고, 같은 위원회에서는 최대 3회까지 연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안전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 제8조 각 호의 해촉 사유와 제11조의 청렴서약서 제출에 대하여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전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거·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하여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등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 위임사항을 정함을 명시함(안 제1조)
-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기능·기능대행을 신설함(안 제7조)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신설함(안 제8조)
-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이전 시 지원범위를 신설함(안 제9조)
-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를 신설함(안 제10조)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3. 7. 28. ~ 2023. 8. 17.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인구교육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0)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거창군청소년수련관
라. 전화 055-940-8882, 팩스 055-940-870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 범위·절차 등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 활용범위 확대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 강화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제9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란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 이하를 말한다.

제10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7조에 따른 거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 위원회의 심의사항

관계법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32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군·구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도와 시·군·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대학·기업·연구소·비영리단체·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단체,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도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인구감소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환경·경관의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재난·재해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문화기반의 확충) 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순회 문화공연·전시 등을 통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직접 제공하거나 문화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예술·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후·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13조(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허가·승인·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
2.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